

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미경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4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1월 25일  
발 의 자 : 우미경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이명희, 이상목, 박마루, 박성숙,  
김춘수, 성중기, 박중화, 황준환,  
유 용, 김영한, 맹진영, 강성언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현재 재건축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“장기전세주택”으로 한정되어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고,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바, 이를 개선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식을 확대함(안 제8조제1항)
- 나.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(안 제8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주택특별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주택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조문 명 “장기전세주택”을 “서울공공주택 공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.

2. 그 밖에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

제8조제2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소형주택
2. 「주택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

제8조제2항부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경과규정)

- ① 조례 시행일 기준 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이나 「주택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장기전세주택) 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재건축소형주택</li> <li>3. ~ 4. (생략)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8조(서울공공주택 공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그 밖에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</li> </ol> <p>&lt;삭제&gt;</p> <p>②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소형주택</li> <li>2. 「주택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</li> </ol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